

**2016년도
부패방지 시책 추진 실적보고서**

2016. 11.

한국주택금융공사

B-1-1

계획의 이행 여부

□ 부패방지 추진계획 이행 여부(계획 대비 100% 이행 완료)

연번	주요내용	실적	관련근거	이행 여부
1	II-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1-1. 반부패 청렴 TF 구성 및 운영(팀장 : 기관장) ○(구성) 기관장을 팀장, 윤리경영 소관부서(창조혁신부) 및 유관부서(감사실·인사부) 소속직원을 팀원으로 하는 '반부패청렴 TF' 구성	창조혁신부 1242-0111("16.4.26)	○
		○(운영) 매월 윤리정책 운영 관련 토의 및 정책이행	창조혁신부 1119-0233("16.8.3)	○
		1-2. 정부 3.0투명성 제고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관련, 정부 요구수준* 충족 * ('15년) 85개 항목→('16년) 95개 항목으로 증가 - 공사 고유업무 연계한 추가 정보목록 발굴 및 업데이트(내집연금 3종세트 상품안내 등 12개 정보 추가) 완료	소비자보호부 1449-0510("16.9.26) 소비자보호부 1329-0534("16.10.10)	○
		○대국민 고수요 데이터 편의성 제고 노력 - (대내)「정부 3.0 실무자협의회 개최」(5월, 8월)를 통한 추진과제 및 홍보활성화 관련 아이디어 도출 - (대외)「정부3.0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6~7월)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 유형(26개) 수집 • 위 과정을 통해 도출된 고수요 데이터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네이버, 다음, 직방, 앞집 등)를 활용한 공사상품(보금자리론, 주택보증, 주택연금) 관련 정보공개(한도, 금리 등) 협의(8월~) 진행 등	IT전략안전부 7119-0524("16.10.7)	○
		1-3.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예산집행 누수방지(예산 운용지침 변경) - 고액(1억 이상) 연구개발용역 발주시 용역기관의 예산집행 적정여부 확인기능 강화 신설 - 업무와 무관한 외부기관의 부당한 비용지원 요구 거절조항 신설 -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지출증빙 불가건*은 집행 제한 내용 등 반영 * (예시) 임의단체 회비집행 등	기획조정실 1259-0187("16.3.4)	○
2	II-1-2 청렴활동 참여 제도화 및 청렴 담당부서 인센티브 강화	2-1. 청렴활동 참여 제도화 ○공사「임직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에 구성원의 정기적인 청렴활동 참여근거 신설 제45조의3(조직구성원 참여 및 의견수렴) 윤리담당책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반부패 청렴정책관련 직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반부패 청렴 추진조직의 운영을 통해 청렴업무 관련 현안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창조혁신부 1511-0306("16.9.28)	○

연번	주요내용	실적	관련근거	이행여부									
2	II-1-2 청렴활동 참여 제도화 및 청렴 담당부서 인센티브 강화	2-2. 청렴담당부서 인센티브 강화 ○ 공사 행동강령에 청렴업무 담당자의 인센티브 강화 근거조항 마련 제48조(포상 등) ① 청렴마일리지 적립 우수자 등이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해외연수기회 우선부여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09.28) ② 윤리업무담당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감사규정」 제11조제1항,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윤리업무담당자”로, “감사업무”는 “윤리업무”로 본다.(본항신설 2016.09.28)	창조혁신부 1511-0306('16.9.28)	○									
3	II-1-3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3-1.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노력 ○ 제도개선 이행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실시(5월) ○ 심사위원(10명) 심사결과 총 33건의 응모작 중 참신성, 효과성 및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2건을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 및 포상(각50만원, 7월) <table><tr><th>순번</th><th>부서명</th><th>아이디어명</th></tr><tr><td>1</td><td>신탁자산부</td><td>자기신탁 관리강화를 통한 부패예방</td></tr><tr><td>2</td><td>정책모기지부</td><td>무방문·무서류 대출 도입을 통한 고객 편의성 제고 및 부패요인 제거</td></tr></table>	순번	부서명	아이디어명	1	신탁자산부	자기신탁 관리강화를 통한 부패예방	2	정책모기지부	무방문·무서류 대출 도입을 통한 고객 편의성 제고 및 부패요인 제거	창조혁신부 1313-0131('16.5.12) 창조혁신부 2172-0187('16.7.4)	○
순번	부서명	아이디어명											
1	신탁자산부	자기신탁 관리강화를 통한 부패예방											
2	정책모기지부	무방문·무서류 대출 도입을 통한 고객 편의성 제고 및 부패요인 제거											
4	II-1-4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4-1. 정기 및 취약시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16. 1월~9월에 걸쳐 총 8회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복무 및 보안실태 - 복지부동 및 소극행정 - 부적절 언행 및 갑질행태 - 을지연습기간 비상근무 실태 및 기강문란 여부 -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위반사항 점검 등	감사실 9211-0045 ('16.1.28) 등 총 16개 문서	○									
5	II-1-5 부패행위자 자체적발 및 처벌 강화	5-1.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자 적발노력 강화 ○ 위 정기 및 취약시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이외에도 고유업무 처리관련 부패행위 발생여부 지속 점검 (본지점 종합(특정)감사(총 10회), 사이버 감사(총 2회), 재무감사 1회 실시) ○ 사안의 경중에 따른 주의환기·경고 등 처분으로 임직원 경각심 고취 및 부패발생 예방노력 제고 - 시정 32건, 주의 63건, 개선 18건, 권고 21건 등 총 170건 지적* *부패행위 적발 또는 행동강령 위반사례는 없음 5-2. 양형기준에 따른 처벌을 위한 권익위 양정기준 반영 ○ “금품수수”를 금품수수(授受)로 표현을 명확히 하고, 징계양정기준 강화(인사규정 제91조~92조, 제95~97조, 별표 4)	감사실 9211-0079 ('16.3.7) 등 총 26개 문서 인사부2111-1256 ('16.6.24)	○									

연번	주요내용	실적	관련근거	이행여부
6	II-1-⑥ 기관 자체 효과성 평가	6-1. 조직역량 및 윤리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이행 ○ 대내외 여건을 고려·도출한 4대 윤리과제와 연 계된 총 36개 소지표의 이행을 위한 일정별 자체 계획 수립 및 이행노력 경주 6-2. 계획 이행에 따른 효과성 평가 실시 ○ 수립된 계획에 대한 이행에 따른 효과성을 정량· 정성적으로 자체 평가 (상세내용은 C-1-1 “기관자체 효과성 평가”참조)	창조혁신부 1329-0114(“16.4.27) 본 보고서 C-1-1 참조	○
7	II-2-① 청렴시민감사관 (옴부즈만) 운영 내실화	7-1. 시책평가 권고안에 따른 운영횟수 충족 및 권한 확대를 통한 제도운영의 양적·질적 개선노력 제고 ○ '16. 3월 위촉, 총 4회에 걸쳐 회의 실시(5·7·9·10월) ○ 옴부즈만 위원장(김월기 회계사)의 사회적 이슈 (공공기관 예산비리) 관련 특별감사 권고에 따른 「예산 운용실태 특별감사」 실시	창조혁신부 2219-0060(“16.3.2) 등 총 5개 문서 제2차 옴부즈만 회의록(“16.7.27) 및 감사실 9212-0274(“16.8.1)	○
8	II-2-② 외부협업체계 운영 활성화 노력	8-1. 「청렴 클러스터」 활동 참여 ○ 부산 혁신도시「청렴클러스터」결성 및 실무회의 참석요청에 따른 참석 및 운영관련 의견 개진 (담당자 조재호 과장) 8-2. 기관간 파트너십 구축 및 협력활동 실시 ○ '15년도 평가결과 3등급 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5월), 한국은행(7월))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협력활동 실시 - 각 기관의 규정검토, 개정소요 발굴 및 제언 - 시책평가지표 이행 노하우 질의 및 응답 등	청렴총괄과-977 (“16.6.14) 및 참석자 연락망 (임한나 사무관) 창조혁신부 1319-0133(“16.5.16) 창조혁신부 1319-0207(“16.7.15) 등 총 4개 문서	○
9	II-3-① 조직내 대상별 청렴교육 내실화	9-1.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이수 ○ 제3기 청렴교육 양성 기본과정 이수(6.22~24, 16시간) (담당자 조재호 과장) 9-2. 전직원(고위직 포함) 외부강사 청렴특강 실시* ○ 공익신고 보호자제도(1H), 청탁금지법(1H) (6.20) (강사 :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이재일 강사) ○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및 내용(2H) (9.20) (강사 : 煎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홍성칠 변호사) * 위 2개 특강 상임임원(기관장, 감사 포함) 전원 현장 참석 2개 모두 동영상 제작, 현장 미참석 직원 별도 수강 9-3. 청렴리더 연수시 외부강사 청렴특강 실시* ○ 사내 부점별 청렴리더(37명) 대상 외부강사 초빙 특강(3H)* 및 부점내 전파교육 실시 (강사 : 국토정보공사 장정아 차장) * 청렴주제 전반(1H), 공익신고(1H), 청탁금지법(1H) 9-4. 타 부서 연수 활용한 내·외부강사 청렴교육 실시 ○ 신입사원 연수 및 3~5급 리더십 연수시 윤리특강 편입 및 교육 실시	교육운영과-2205 (“16.7.1) 창조혁신부 2229-0172(“16.6.15) 창조혁신부 2229-0275(“16.9.7) 창조혁신부 2223-0235(“16.8.5) 인사부 2221-1232(“16.6.22) 등 4건	○

10	II-3-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 및 전파	10-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자료 제출 ○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및 제도운영 우수사례(3월) ○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및 내규 등 운영현황(10월) 10-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교육 실시 ○ (전직원) 전 임직원 윤리특강(6. 20)시 공익신고 특강 실시 ○ (청렴리더) 청렴리더 연수(8.26~27)시 공익신고 교육 실시 ○ (외부고객) 타 부서 주관 외부고객 교육(간담회) 등을 활용한 공익신고 교육 실시* - (주택연금부) 전 지점(20개)에서 실시(연중)하는 「은퇴금융아카데미」 참여 고객(약 2천명) 대상 - (주택보증부) 전 지점(20개)에서 실시(9~10월)하는 「사업자보증 간담회」 참여업체(약 150여개) 대상 * 권익위 제공 교육자료(PPT) 활용(영상물 표출 홍보병행 목적) 10-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및 운영 성실도 제고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효과성 극대화 노력 - (영상 표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DID(전광판) 및 다수의 외부고객 참석 교육 활용한 권익위 PPT파일 표출(교육 병행) - (포스터) 인근 관공서(문현 1~4동 주민센터) 및 BIFC내 공사입점층(23~27층)에 포스터 게시 - (홈페이지 등) 블로그,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을 활용, 다양한 공익신고제도 전파활동 실시 • 공익신고 분야 및 내용·방법·포상 등 관련 주요내용 자세히 소개	창조혁신부 1319-0063('16.3.3) 창조혁신부 1319-0326('16.10.10) 창조혁신부 1319-0084('16.3.28) 주택보증부 6290-0650('16.9.7) 창조혁신부 1319-0084('16.3.28) 창조혁신부 1319-0328('16.10.10) 등 3개 문서 홈페이지 내 [공사소개]> [윤리경영]>[공익신고]	○
11	II-4-1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	11-1. 부패 취약분야 관련 권고과제 이행 ○ 공사 권고과제 없음(0건, 권익위 메일 통보) ○ 자율적 제도개선과제 발굴(2건) 및 이행완료* * 1건 이행(3월), 1건 완료 예정(진행중, 12월) 11-2.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권고사항 이행 ○ 권익위 권고안('15. 9월 시행) 행동강령에 반영 완료 ○ 외부강의 사전신고, 대가기준 및 근태준수여부 점검계획 수립 및 완료 ○ 외부강의 실태분석 기관장 보고 완료 11-3.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활성화 ○ 권익위 홍보요청(2회) 기한내 이행 및 실적제출 완료 -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기간 홍보실적 제출(3월)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기간 홍보실적 제출(9월)	신탁자산부 2172-1776('16.10.6) 정책모기지부 1329-0757('16.10.10) 창조혁신부 1511-0312('15.10.16) 창조혁신부 9219-0200('16.7.12) 창조혁신부 1329-0229('16.8.2) 창조혁신부 1319-0082('16.3.21) 창조혁신부 1319-0290('16.9.22)	○
12	II-4-2 청렴도· 시책평가 결과 공개	12-1. 청렴도 조사 및 시책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 활용, 결과 공개(4월말)	캡처 이미지 참조 (본 보고서 C-1-3) 참조	○

13	II-4-③ 반부패 수범사례 이행	13-1. 각 사례별 소관부서 대상 이행여부 확인 및 협조 요청 공문 시행 이후 이행방안 협의(6월~) 13-2. 주요 미이행 사례에 대한 자체·협업 이행 완료 ○(자체) 퇴직임원 윤리규정 관련 행동강령 개정(9월) ○(협업)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10월)	창조혁신부 1329-0181('16.6.28) 창조혁신부 1511-0306('16.9.28) 인사부 1529-2014('16.10.25)	○
14	III-1-Ⅰ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14-1.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전년 대비 객관적·체계적인 진단, 결과 도출 및 피드백을 목적으로 전문 용역업체 위탁을 통한 진단 실시(권익위 표준모형 활용) ○계획 수립 및 진단 실시(5월~6월 중순), 담당임원 및 사장 결과 보고 완료(6월말)	창조혁신부 1329-0143('16.5.23) 내부 보고문서 (‘16.6월)	○
15	III-2-Ⅰ 평가(진단) 결과 환류	15-1.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결과 활용 방안 ○C-1-1-1(기관 자체 효과성 평가) 지표작성 관련, 전년대비 결과비교를 통한 금년 윤리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효과성 검증자료로 활용	창조혁신부 1329-0134('16.5.19)	○

B-1-2

청렴 정책 참여 확대

평가지표 청렴업무 담당부서,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 청렴업무 담당부서, 담당자 인센티브 제도 운영 실적

연번	인센티브 명칭	인센티브 주요 내용	인센티브 부여 실적	관련 근거
1	청렴업무 전담팀(조직) 구성	반부패청렴 전담 TF 운영 반부패 청렴업무 전담팀 구성 및 명칭변경 (성과혁신팀→청렴혁신팀)	시책평가계획 수립부터 이행·평가 및 환류까지 사장 주도하 전사적 반부패 정책 운영 내부성과보다 반부패청렴 역량강화에 역점, 반부패청렴업무 전담팀 구성(명칭 변경, 팀내 전 구성원에 반부패청렴업무 분장)	창조혁신부 1242-0111 ('16.4.26) 기획조정실 1241-1195 ('15.12.30)
2	청렴업무 담당자(부서) 위상 제고	포상, 인사가점, 해외연수 기회 우선 부여 청렴담당자에게 감사인에 준하는 특례 부여	- 공사 윤리정책발전 기여자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 우선부여' 문구 명시(제48조) - 감사규정에서 정한 감사인의 특례를 청렴 업무담당자에게 준용토록 행동강령 개정(제48조)	창조혁신부 1511-0306 ('16.9.28)
3	승진시 우대조치	인사가점 및 상금 부여	윤리담당자(엄미래 대리)에게 창립기념일에 표창장(인사가점 0.1점) 및 포상금 부여	인사부 2171-0382 ('16.2.29)
4	해외 연수 기회 부여	해외 해비타트 연수기회 부여	윤리담당부서 직원(장선호 대리) 인도네시아 해비타트 활동기회 부여	소비자보호부 1819-0446 ('16.8.24)

[참고 : 윤리업무담당자에 대한 해외연수기회 부여 및 감사인 특례조항 준용근거 마련 세부내용]

제48조(포상) 이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 및 청렴마일리지 적립 우수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제48조(포상 등) ① 청렴마일리지 적립 우수자 등 이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해외연수기회 우선부여 등 포상을 -----.(개정 2016.9.28)

② 윤리업무담당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감사규정」 제11조제1항,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윤리업무담당자” 로, “감사업무” 는 “윤리업무” 로 본다. (개정 2016.9.28)

평가지표	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의 구성원 참여, 협의 실적
-------------	-----------------------------------

- ☐ 주요 업무에 대한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 제도 운영 실적 중 우수사례 제출(1건)

사례	윤리주간 운영·행사 및 부패취약분야 공모 포상
-----------	----------------------------------

☐ 제도화 여부

- 상시 운영(임직원 행동강령에 제도화 근거 마련)

☐ 세부내용

- 조직 구성원 참여의견 수렴절차 제도화 및 운영내역

- 제도화 근거

- 행동강령 제45조의3(조직구성원 참여 및 의견수렴)

- 운영내역

가. 윤리주간 행사 실시

- (청렴퀴즈 대회) ‘임직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관련 직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각 10문제, 20문제)
- * (청탁금지법 퀴즈) 윤리주간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별도 실시(9월말~10월초)
- (슬로건 공모전) 블라인드 심사(심사위원 10명)로 총 14건 포상, 입상작 중 원하는 슬로건을 사내메일 ‘전자서명’ 란에 의무 반영 및 결과를 부점별로 문서 회신토록 의무 부여
- (청렴존 포토제닉) 공사 ‘청렴존’에서 청렴주제를 달아 찍은 사진을 심사

나.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 권익위에서 정한 ‘공직유관단체’ 주요 부패 취약분야 관련, 부점별 제도개선 사항 발굴 독려
- 입상작 심사시(심사위원 10명) 부점별 고유업무와의 연계성을 중점 고려하되 효과성 및 실행 용이성 등 감안

○ 인센티브 제공실적

- － 윤리정책 집행관련 중요도, 결과물 제출관련 노력도 및 이행시 파급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부문별 포상인원 및 액수 배정
(개인 46명, 부서 9개에 대하여 총 4,380천원 포상)

구 분	포상총액 (천원)	포상인원 (부서)	비 고
청렴퀴즈(행동강령)	200	20	특점 및 응모 선착순 (동일부서 동일답안 포상제외)
청렴퀴즈(청탁금지법)	800	35	
슬로건 공모전	500	14	최우수(1명), 우수(3명), 장려 및 입선(각 5명)
청렴존 포토제닉	180	12	참가인원수, 제목 및 사진의 부합성 등 고려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아이디어	2,700	(9)	부점 고유업무와의 연계성, 효과성 및 실행 용이성 등 고려

□ 파급효과(성과)

○ 윤리주간 행사

- － ‘윤리’를 연상시키는 숫자 ‘6’과 ‘2’가 모두 들어가는 첫째 주간
(6.20~24)을 ‘윤리주간’ 으로 지정, 다채로운 구성원 참여의 장 마련
 - 날로 더해가는 윤리경영의 중요성 각인 및 전사적인 청렴
문화 확산의 촉매제로서의 역할 수행
 - ‘윤리경영 슬로건’ 입상작 전 직원 사내메일 서명 플랫폼에
반영, 공직자로서의 경각심 고취를 통한 부패예방효과 제고

○ 부패취약분야 아이디어 공모

- － 획기적인 포상을 통해 전사적 부패근절 및 예방책 발굴을
위한 효과적인 동기부여 요인 제공
- － 부점별 정책변경시 부패유발 요인 점검 및 예방효과를 우선적
으로 고려토록 하는 계기 마련

□ 관련 근거

연번	문서번호	제목	시행일자
1	창조혁신부1313-0131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16.5.12
2	창조혁신부1419-0170	HF 청렴, 윤리주간 행사 실시	'16.6.10
	창조혁신부1690-0314	청탁금지법 관련 퀴즈이벤트 실시 및 청렴 마일리지 포상	'16.9.29
	창조혁신부1690-0337	청탁금지법 관련 퀴즈이벤트 포상 실시	'16.10.14
3	창조혁신부2172-0187	윤리주간 행사참여 등 우수직원(부점) 포상	'16.7.4

B-1-3

청렴 거버넌스 운영

평가지표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운영 횟수 및 직무 실적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운영 횟수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운영 근거사항 >

연번	회의명	주요 내용	운영 일자	관련 근거
1	제1차 윤리경영 옴부즈만 회의	- 외부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관련 행동강령 규정 개정 소요 발굴 - 기타 개정소요 발굴	'16. 5. 24	창조혁신부 1119-0135 ('16.5.19)
2	제2차 윤리경영 옴부즈만 회의	-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간 변경(공직자 윤리법 제17조 반영) - 구성원 윤리정책 참여근거 마련 및 청렴교육 이수기준 내실화 - 청렴담당부서 위상 제고	'16. 7. 27	창조혁신부 1119-0217 ('16.7.21)
3	제3차 윤리경영 옴부즈만 회의	외부 익명신고시스템 운영기준 제정(안)	'16. 9. 6	창조혁신부 1119-0264 ('16.9.5)
4	제4차 윤리경영 옴부즈만 회의	임직원행동강령 개정건 관련 제언 등	'16. 10. 12	창조혁신부 1119-0325 ('16.10.10)

<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근거사항 >

연번	문 서 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1	윤리경영 옴부즈만 위촉	창조혁신부 1119-0078('16.3.15)	2016. 3. 15

□ 청렴시민감사관 직무 실적*

연번 (차수)	안전내용	주요 제언 및 조치(의견)사항	운영 일자	관련근거 (개별)**
1	- 외부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관련 행동강령 규정개정 소요 발굴 - 기타 개정소요 발굴	○ 익명신고시스템 도입관련, 허위신고 대응 등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외부 익명신고시스템 운영기준 제정」('16. 9. 28) ○ 「청탁금지법」 조항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용어정의부터 행동강령에 체계적으로 반영, 청렴 선도기관으로서 이미지 제고 당부 - 「공직자 임직원행동강령」 및 「공무원 행동강령」 표준안 반영 등을 통한 「청탁 금지법」 주요사항을 내실있게 반영 • 용어정의, 표현정비, 금품등 수수금지 관련 법률 주요내용, 외부강의 신고범위 및 수수기준 변경, 하위기준 제정에 따른 위임조항 신설(개정) 등('16. 9. 28)	'16. 5. 24	창조혁신부 1521-0310 (2016.9.28) 창조혁신부 1511-0306 (2016.9.28)
2	- 예산운영실태 특정감사 -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간 변경(공직자 윤리법 제17조) - 구성원 윤리정책 참여근거 마련 및 청렴교육 이수기준 내실화 - 청렴담당부서 위상 제고	○ 공공기관 예산사용(사회적 이슈) 관련 특별감사 실시 및 참여 요구 - 예산운영실태 특별감사 실시('16.8.18~26) - 예산운영실태 특정감사 귀임보고 및 처분('16.9.28) ○ 청렴담당부서 위상제고(제48조) 관련, 48조 및 48조의 2 모두에 언급된 청렴업무담당자에 대한 특례내용을 48조에서 통합하여 개정 - 「임직원행동강령」 통합개정시 위 요구 사항 반영(제48조의 2 삭제·통합 및 표현정비, '16. 9. 28)	'16. 7. 27	감사실 9212-0274 (2016.8.1) 감사실 9212-0328 (2016.9.28) 창조혁신부 1511-0306 (2016.9.28)
3	외부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기준 제정(안)	○ 시스템 운용회사(레드취슬)의 지배구조 점검을 통한 부패취약 여부 확인(익명성 보장 등) 및 제도홍보를 통한 운영 활성화 - 활발한 홍보(포스터, 스티커, 동영상 등)를 통한 제도 실효성 제고노력 이행 • 포스터, 스티커 전사 배포(8월), 동영상 게시(10월중)	'16. 9. 6	창조혁신부 9219-0247 (2016.8.16)
4	기타 임직원행동강령 개정건 관련 제언 등	○ 행동강령 표현정비 - (제3조) 2중 서약서 양식 통합 (제17조) 직무관련 정보이용 거래제한 관련, '정보'와 '미공개정보' 용어를 통합 - 위 두가지 내용 모두 권익위 강령 표준안에 반영된 사항으로 수정 어려움 ○ 「청탁금지법」 관련 공사 가이드라인 구축을 통한 위반사례 예방 필요 - 부점별 사례 및 답변 취합, 권익위 매뉴얼, 법령 요약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 제작 및 시행완료('16.9.28) - 추가 질의·답변사례 및 권익위 해석 변경사항 지속 반영하여 최신화 작업 지속하겠음	'16.10.12	창조혁신부 1511-0306 (2016.9.28) 창조혁신부 1511-0306 (2016.9.28)

* (볼드체) 청렴시민감사관 제언(또는 요청사항), (이하) 제언에 대한 공사의견 또는 조치(수용)사항

** 관련근거(공통) : (창조혁신부 1119-0356, 16.10.21) 윤리경영 옴부즈만 회의결과 보고

평가지표 **민간단체와의 협력체 구성·참여 및 민관협력체 활동실적 (가점)**

<민관협력체 활동 실적>

연번	활동명(건명)	일시	활동내용
1	부산 혁신도시내 청렴클러스터 실무회의(간담회)	'16.6.29	○ 활동종류 - 권익위 주관* 간담회 및 협력활동** * 부산지역 청렴클러스터 실무회의 참석(청렴총괄과-000977, '16.6.14) ** 부산시 등 19개 관공서 및 공공기관 담당자 참석 ○ 활동내용 - 혁신도시 내 권익위에 대한 공공기관 요청 사항 공유 • 청탁금지법 관련자료 제공, 강사지원,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 요청 등 - 혁신도시내 청렴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의견 공유 • 윤리정책 집행 관련 협력활동 실시 (예시) 청탁금지법 특강 공동개최 • 지자체 행사에 공공기관 후원 및 참여방안 등 논의

* 관련근거 자료 : 1. 부산지역 청렴 클러스터 실무회의 참석자 명단(권익위 송부) 1부
2. 권익위 참석요청 공문(청렴총괄과-000977, '16. 6. 14)

B-2-1

부패취약분야 개선

평가지표 권고과제 이행실적

○ 총괄표

전체 세부과제(A)	이행완료 과제(B)	배점(0~50점)	이행점수(B/A*배점)
0	0	0	0

※ 평가대상 세부과제수가 0개인 기관은 모두 0으로 기재

○ 과제별 현황

연번	권고과제명	세부과제명	완료여부	비고
1				

※ 평가대상 세부과제수가 0개인 기관은 공란 처리

투명하고 체계적인 증권정보 공시를 통한 부패 예방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자 황성욱, 051-663-8623)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자기신탁에 따른 부패가능성

- 「공사법 제32조제1항」에 의거, 공사는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이하 '자기신탁')을 설정하여 MBS(주택저당증권)를 발행하고 있음

* 자기신탁 : 주택저당채권 관련 자금관리 위탁자와 수탁자가 모두 공사인 신탁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신탁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이는 MBS의 원활한 발행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이지만, 수탁자가 '자기 자신' 임에 따라 부패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 공시채널의 분산에 따른 정보 제공 관련 체계성·투명성의 한계

- 신탁관리 공시 채널이 공사 홈페이지 내 부속메뉴, E-mail 등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 단편적이고 일차원적인 형태의 정보 제공 수준으로 이루어져 정보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증권정보가 미흡함에 따라 MBS 대외 신인도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부패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필요

- 자기신탁에 따른 부패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는 '13년도 「신탁자산부」를 신설하여 신탁관리의 대외적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 신탁 공시채널의 일원화 및 통합관리를 통해 신탁관리의 대외적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16. 3월 유동화증권 통합공시포털인 「K-MBS」 정식 오픈

□ 내 용

○ 「K-MBS」 통합공시 포털 개요

- 투자자에게 공시를 강화하여 신탁관리의 대외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MBS에 관한 통합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6.3월 단독 공시 개시한 수요자 맞춤형 전용 공시포털*

* 홈페이지내 부속메뉴, E-mail 등으로 분산된 정보제공 채널을 일원화

유동화증권 통합 공시포털 「K-MBS」

▶ 웹 사이트 주소(URL) : <http://kmbs.hf.go.kr>

○ 구성 항목

- 기초자산 상세정보, 발행정보, 원리금 지급 및 콜옵션 행사 정보, 시장거래현황, 시계열화된 통계 등 신탁관리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 주요 이용자에게 관심 종목 등록 기능, One-Stop 조회 기능 등을 제공하여 편리하게 조회 가능

○ 주요 이용자 : 투자자, 채권평가사, 증권사, 금융정보사 등

- (투자자) MBS 발행거래 및 콜옵션 행사 정보를 투자 의사 결정에 활용
- (채권평가사) PSK* 정보를 MBS 가격평가에 활용

* Prepayment Standard Korea : 한국 주택담보대출의 조기상환 특성을 반영한 표준모형

- (증권사) 발행입찰 참여 및 유통거래 중개를 위해 활용
- (금융정보사) 공사의 원천정보를 가공하여 MBS 투자정보 제공

□ 추진실적(활동)

- ▶ K-MBS 개발기간 : '15.4월 ~ '15.12월
- ▶ 안정화 기간 : '16.1월 ~ '16.2월
- ▶ K-MBS 단독공시 : '16.3.10일

안정화 기간 동안 '공사 홈페이지' 와 'K-MBS' 이중 공시
↓
'K-MBS' 단독 공시

- ▶ 이용현황 분석 : '16.8월
 - 메뉴별 조회수 자료와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반영 추진
- ▶ 고도화 사업 추진 : '16.9월 ~ '16.12월(예정)
 - Pass-through MBS 도입으로 인한 관련정보 공시기능 개발
 -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 개선

□ 기대효과(성과)

- 투자자, 신용평가사, 채권평가사 등 신탁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글로벌 수준의 공시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신탁관리의 투명성·객관성 확보 및 대외 신인도 상승
 - MBS 원본 및 배당수익 지급, 콜옵션 행사의 적시 공시
 - 신탁 내 여유자금 규모 공시
 - 신탁 내 기초자산(대출채권) 현황에 관한 상세정보 공시

⇒ 자기신탁에 따른 자금운용 관련 부패 가능성을 철저히 예방
- 투자자의 'MBS 적정 시장가격' 판단 능력을 제고하여 MBS 발행 및 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 기 타

○ 언론 보도사례

- 「K-MBS」 오픈소식을 언론에서 보도하여 투명하고 철저한 신탁관리의 의지가 대외적으로 표명됨

▶ “주택금융공사는 ‘MBS 통합 공시포털(가칭)’ 오픈을 계기로 선진화된 MBS 정보 공시 및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15.12.3.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등)

□ 제도화 여부

- 시스템 개선을 통한 실질적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부패예방효과 극대화

* 「K-MBS(유동화증권) 통합 공시포털 개발」 문서 등 시행(개발 개요 메뉴얼(해당문서 불임) 포함, 기능설명(대외 배포용) 메뉴얼 제작 등(붙임자료 추가 불가 방침에 따라 현지점검 대비 보관)

□ 추진 근거

근거 종류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계획	① 유동화증권 통합 공시포털 개발(안)	2015.05.07	신탁자산부 5431-0874
	② K-MBS 고도화사업 추진(안)	2016.09.07	신탁자산부 7112-1603

무방문·무서류 대출 도입을 통한 고객 편의성 및 부패유발요인 제거

(정책모기지부, 배현식, 051-663-8293)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공사는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취급시 「보금자리론 업무 처리기준」 제2장 제3호(심사시 제출받을 서류)*에 따라 채무자(필요시 배우자 포함) 각종 서류를 제출받고 있음
 - * 소득 및 재직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매매계약서, 각종 동의서 등 (본 지표 제출지침(불입제출 불가)에 따라 상세조항 인용은 생략)
- 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과정에서 청탁관련 부패유발 가능성 내재
 - 소득증명자료 등 4~5개의 서류를 직접 제출하면서 불필요한 심사 조기진행 요구, 감정평가액 조정에 따른 대출한도 증액 요청 등 부정심사 청탁 가능성이 존재하며,
 - 서류 제출 및 입력 과정에서 미비서류 발생, 심사오류, 서류 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정사용 발생가능성 상존함
- 따라서 실물 서류제출을 지양하고 전자 정보를 통한 업무 처리 방식을 도입하여 대면 업무를 최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청탁 기회를 근절하고 개인정보 부정사용 등 유출 위험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됨

□ 내 용

- 무방문·무서류 대출 시스템 구현으로 대면업무를 줄이고 개인 정보유출 가능성 사전 차단 및 업무 누락을 방지

① 필요 서류 제출 시 이미지파일 제출 기능 도입

- 사본제출 가능 서류는 신청화면에서 이미지파일로 첨부·제출하는 기능을 도입하여 대면 행정을 감소시키고 서류 분실 우려 및 개인정보유출 위험 최소화

② 기관 간 연계를 통한 개인정보 자동 전송 및 입력 서비스 도입

- 행정자치부와 전산망 연계를 통해 정보를 자동 전송받는 방식을 도입하여 공사 직원의 서류출력·전산입력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직원의 수기 업무 지양 및 업무 정확성 확보

③ 자동 연소득조회 기능(스크래핑 서비스) 도입

- 고객이 공사 홈페이지에서 소득제공기관(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링크 후 본인의 연소득을 조회하면 이를 인식하여(스크래핑) 공사 시스템에 저장하는 기능
- 실물 소득서류 발급·제출이 불필요하여 개인정보유출 위험감소 및 서류 위조 등의 부정사용 가능성 사전차단
-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뿐 아니라 스마트폰(Smart 주택금융App)에서도 연소득 조회가 가능한 기능을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든 실물 소득서류 없이 정책모기지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 구현

〈 시스템 개선에 따른 서류제출 방법 전·후 비교〉

제출 서류	개선 전	개선 후
주민등록등본	전산조회·출력 후 입력	자료 자동 전송
소득증명 자료	사본 직접 제출	이미지 첨부 또는 스크래핑서비스 이용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 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사본 직접 제출	이미지 첨부
임대차계약서 등 주택관련 서류	사본 직접 제출	이미지 첨부
개인(신용)정보 등 확인을 위한 동의서	원본 직접 제출	원본 직접 제출

□ 추진실적(활동)

○ 2015년 이전 실적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서류 출력, 2010년)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를 고객이 직접 제출하는 대신 공사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홈페이지에 공인인증로그인 후 서류 출력 (사전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징구)
- (아낌e 보금자리론 출시, 2014년)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서를 직접 작성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대출거래약정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

○ 2016년 실적 (사업 진행 중)

- 「정책모기지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시스템 개선 추진 중

※ 「정책모기지 시스템 고도화 사업」 주요 내용

- ◇ 정책모기지 서류 제출 시 이미지파일 제출 기능
- ◇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전송받아 심사에 활용하는 기능
- ◇ 스마트 스크래핑 서비스 (연소득 자동조회 기능)

※ 「정책모기지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경과

- (16. 6月) 「정책모기지 시스템 고도화 사업」 내부 결재
- (16. 6月) 사업수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의뢰
- (16. 8月) 사업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공고
- (16. 9月) 사업수행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6. 10月) 우선협상대상자와 상세요건 협의 중
- (16. 12月) 요건정의 및 개발완료 예정

□ 파급효과(성과)

- (공사입장) 불필요한 청탁 기회 제거 및 개인정보유출 부담을 최소화하여 부패내재요인 제거
 - 제출 서류 전자화를 통한 대면 업무 감소로 대출 심사 조기 진행 요구 및 심사 관련 청탁 등의 기회를 제거하여 부패요인 근절
 - 전송된 정보가 자동 입력되므로 서류 출력 및 입력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 오류 및 개인정보유출, 부정사용 가능성을 사전 방지
 - 제출서류 이미지화를 통해 서류 점검이 용이해져 미비서류의 신속한 확인 및 심사 처리의 정확성·객관성 확보
- (고객입장) 신속한 대출 진행으로 심사 과정 관련 고객의 청탁 유인 제거 및 개인정보유출 우려 최소화
 - 제출서류 이미지화로 심사의 신속성·정확성이 확보되어 대출 당일 확약통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객의 편의성 증대 및 심사 진행 관련 청탁유인 제거
 - 방문 또는 우편 제출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유출 가능성 사전 차단

□ 제도화 여부

- 시스템 실제 개선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부패예방효과 극대화
 -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2회) 및 전산개발 문서시행(개발개요 매뉴얼해당문서 붙임 포함)로 사규개정 및 전산개발 요건정의 근거 확보(붙임자료 추가불가 방침에 따라 현지점검 대비 보관)

□ 추진 근거

근거종류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계획	정책모기지시스템 고도화 추진	'16.6.29	정책모기지부 5181-0464
사규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16.6.8	정책모기지부 1529-0392
		'16.10.25	정책모기지부 1529-0805

평가지표

기관 간 협력에 의한 사규 개선 건수(가점)

□ 공직유관단체 사규 협력개선 실적

○ 기관 간 부패영향평가 협력과제 개선 실적 : 4건

※ 기관 간 협력하여 ‘부패영향평가 기준(붙임 1)에 적정하게 사규를 개선한 실적을 아래 양식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평가가 불가능함에 따라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조문별 평가이므로 한 개 조문에 한 개 평가서 작성)

< 기관 간 협력사규 개선 목록 >

연번	협력기관	사규명	개정일	개정내용		담당자 (관련 평가기준)
				구 조문	신 조문	
1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16.5.31	제30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창조혁신부 조재호 051-663-8554 (특혜발생 가능성)

연번	협력기관	사규명	개정일	개정내용		담당자
				구 조문	신 조문	
2	국민체육진흥공단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기준	'16.5.31	제25조(보상금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자료 부족으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 (중략) 4.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하략)	제25조(보상금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자료 부족으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 (중략) 4.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u>다만,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경우는 제외</u> (하략)	창조혁신부 조재호 051-663-8554 (제재규정 적정성)
3	국민체육진흥공단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기준	'16.5.31	제29조(외부신고의 준용) 외부고객이 공사와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 기준을 준용한다. 단, 제8조제2항,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외부신고의 준용) 외부고객이 공사와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 기준을 준용한다. (단서 삭제)	창조혁신부 조재호 051-663-8554 (특혜발생 가능성 및 제재규정 적정성)
4	한국은행	임직원 행동강령	'16.9.28	제22조의2(퇴직임직원의 취업제한)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직원에 대하여 윤리경영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퇴직임원의 취업제한) 상임임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u>공사의</u>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u>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며, 취업제한기관의 범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를 준용한다.</u>	창조혁신부 조재호 051-663-8554 (제재규정 적정성)

※ 제·개정 사례가 부패영향평가지침 상 11개 평가기준과 관련이 없는 경우 불인정

B-2-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평가지표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 운영

□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권고」 사항의 이행

< 권고사항 이행여부 체크 목록 >

번호	권 고 내 용	이행여부	제출
1	▪ 원고료를 포함한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마련	○	임직원행동강령 (붙임 1)* *제29조 참조
2	▪ 외부강의등 월 3회·6시간 제한 규정 마련	○	
3	▪ 대가기준 초과 금액수령시 반환 의무화 규정 마련	○	
4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자체 점검	○	증빙공문 참조 (붙임 2~3)
5	▪ 외부강의 실태분석 및 기관장 보고	○	

※ 파일명

1.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직원 행동강령.hwp
2. (한국주택금융공사)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자체 점검계획.hwp
3. (한국주택금융공사) 외부강의 실태분석 및 사장님 보고(업무지도 병행).hwp

평가지표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적

□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적(총 8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내역>

	점검 명칭	점검기간	점검조항	점검계획·결과문서 (문서번호)
1	설 명절 공직기강 점검	'16.1.29~2.5	-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 복무 및 보안실태	- 감사실9219-0030('16.1.28) - 감사실9211-0045('16.2.15)
2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복무점검	'16.4.1	-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 복무 및 보안실태	- 감사실9219-0109('16.3.31) - 감사실9219-0125('16.4.6)
3	공직기강 점검	'16.5.12	-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 복무 및 보안실태	- 감사실9219-0163('16.5.12) - 감사실9219-0164('16.5.16)
4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점검	'16.7.18~7.22	-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 복무 및 보안실태	- 감사실9219-0239('16.7.6) - 감사실9219-0276('16.8.2)
5	공직기강 점검	'16.7.20	-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 복지부동 소극행정 점검 - 부적절 언행·갑질행태 점검	- 감사실9219-0255('16.7.18) - 감사실9219-0259('16.7.20)
6	을지연습기간 공직기강 점검	'16.8.22~8.25	-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 을지연습기간 비상근무 실태 - 을지연습기간 기강문란 해이	- 감사실9219-0290('16.8.22) - 감사실9219-0309('16.9.6)
7	추석명절 공직기강 점검	'16.9.5~9.9	-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 복무 및 보안실태	- 감사실9219-0296('16.8.23) - 감사실9211-0318('16.9.21)
8	복무실태 점검	'16.9.28	-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 복무 및 보안실태 - 청탁금지법 관련 점검	- 감사실9219-0321('16.9.26) - 감사실9219-0346('16.9.29)

평가지표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통보 및 시정권고 이행 협조도

☐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통보 협조

번호	권 고 내 용	비 고	문서번호
1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또는 개정	○(개정 2회)	창조혁신부 1511-0160('16.5.31) 창조혁신부 1511-0306('16.9.28)
2	행동강령 제·개정시 권익위 통보 여부	○	창조혁신부 1319-0167('16.6.2) 창조혁신부 1311-0317('16.9.29)

☐ 기관별 행동강령 시정권고 이행 협조도

번호	권 고 내 용	이행여부
1	권익위로부터 행동강령 시정권고를 받은 여부	해당사항 없음
2	권익위의 시정권고안 이행 여부	해당사항 없음

B-2-3

부패행위 처벌 강화

평가지표

정원대비 부패행위자 자체적발 실적 비율

☐ 정원대비 부패공직자 자체적발 실적 비율

○ 자체적발 실적이 있는 기관

- 공사 해당사항 없음

○ 자체적발과 외부적발 실적이 모두 없는 기관 : 자체점검 8회

※ B. 2-2. 지표를 참고하여 점검 횟수 기재

※ B. 2-3.의 ②, ③ 소지표도 이 곳에 기재하는 것으로 같음

평가지표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
-------------	--------------------

☐ 기관의 징계양정기준 실제 적용 여부

○ 공사 : 부패사건 없음

B-3-1

청렴교육 내실화

평가지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 실천을 위한 교육 실적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 실천을 위한 교육 실시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교육 1회 이상 실시 실적

교육일시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인원	근거자료(공문)	비고
'16.6.20	2시간	전직원(전임원 포함)	738명	창조혁신부 2229-0172 ('16. 6. 15)	청탁금지법(1H) 공익신고(1H)
'16.8.25	3시간	부점별 청렴리더	37명	창조혁신부 2223-0235 ('16. 8. 5)	청탁금지법(1H) 공익신고(1H) 윤리전반(1H)
'16.9.20	2시간	전직원(전임원 포함)	769명	창조혁신부 2229-0275 ('16. 9. 7)	청탁금지법(2H)
'16.9.27	2시간	본사 기획팀장 및 참석희망자	35명	-	청탁금지법(2H) 캠코강의 청강

※ (공통 근거자료) (창조혁신부 2229-0327, 16.10.10) 「16년도 윤리(반부패 청렴)교육 결과보고」

평가지표 청렴교육 강사 양성 기본과정 이수 실적

□ 청렴교육 강사 양성 기본과정 이수 실적

소속기관	이수 현황						
	부서	직급	성명	기수	교육일자	이수여부	비고
한국주택 금융공사	창조혁신부	4급	조재호	3기	6.22~24	여	

평가지표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실적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고위직 정원 (A)	교육이수자 수 (B)	이수율 (B/A×100)	근 거	비고
7명	7명	100%	이수실적 : 아래 서식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실적> 추가 작성	

참고 : 고위공직자 범위(기관 직제 기준)

- 공직유관단체 : 상임임원 이상
- 전년과 동일하게 정무직, 선출직, 공직유관단체 기관장도 정원 산정 시 포함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실적 >

연번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직급	성명	이수시간	비고
1	• '16. 6. 20 교육 - 공익신고(1H) - 청탁금지법(1H) • '16. 9. 20 교육 - 청탁금지법(2H)	'교육과정명' 참 조	사장	김재천	4H	
2			감사	권순익	4H	
3			부사장	정용배	4H	
4			이사	권인원	4H	
5			이사	김성수	4H	
6			이사	유상규	4H	
7			이사	이준녕	4H	

☞ 관련 근거[기관 정원표, 교육계획, 교육결과(사진포함) 보고서, 서명부]는 별도 제출

※ 청렴연수원, 자체교육훈련기관 등을 활용하지 않고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고위직 청렴교육을 실시한 경우 아래 서식을 **추가로** 작성

교육일시	교육시간	주관부서	진행 강사	비고
'16.6.20	2시간	창조혁신부	(사)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이재일 강사	
'16.9.20	2시간	창조혁신부	前 권익위 부위원장 홍성칠 변호사	

평가지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조사 협력 및 이행노력**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관련 실태조사 협력

- 권익위 요청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제출(3월, 10월)*

* (창조혁신부 1319-0063, '16.3.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제출

* (창조혁신부 1319-0326, '16.10.10)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제출

※ 공문시행 시 작성 서식 및 참고자료를 통보할 예정이오니, 작성서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실적보고서 작성 불필요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관련 이행 노력도

- 공익신고 관련 간담회·토론회 등 위원회 활동 참여 및 제도 개선, 공동조사 협조 등 실적을 평가*

* 공사의 경우 권익위로부터 별도 협조요청 없었음

※ 별도 제출자료 없음(위원회에서 간담회·토론회 개최 및 공동조사 협조 시 적극 협조 바람)

☞ 실적보고서 작성 불필요

평가지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교육 시행 및 홍보 실적**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교육 시행

교육일시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인원	방법	근거자료	비고
'16. 6. 20	1H	전 임직원	738명	집합	창조혁신부 2229-0172('16.6.15) 창조혁신부 2229-0327('16.10.10)	내부
'16. 8. 25~26	1H	부점별 청렴리더	37명	집합	창조혁신부 2223-0235('16.8.5) 창조혁신부 2229-0327('16.10.10)	내부
연중	1H(회당)	은퇴금융아카데미 참석자(고객)	2,000명	집합	창조혁신부 1319-0084('16.3.28)	외부
9~10월	0.5H(회당)	사업자보증간담회 참석자(고객)	100명	집합	주택보증부 6290-0650('16.9.7)	외부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실적

연번	유 형	일시(기간)	횟 수	장 소	세부 내용	비 고
1	홍보영상물	10.11~12.31	150회 이상 (1일 기준)	BIFC내 DID (전광판, 1~2층)	공익신고 이미지 파일 송출	
2	포스터 홍보	10.11~12.31	-	인근 주민센터 (문현 1~4동) BIFC내 공사 각층 (23~27층)	게시판, 엘리베이터 앞 등 포스터 부착	
3	온라인 매체 홍보	10.11~12.31	-	홈페이지, 블로그, 뉴스레터	(홈페이지) 배너연결, 안내 사항 게시 (블로그) 안내문구 직접 제작 및 소개 (뉴스레터) 블로그 게시 내용에 연결링크 설정	

평가지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성실도(가점)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성실도

구분	일시	내용																	
공익신고 처리관련 내부 운영체계 강화	'16. 9. 28	□ 외부익명신고시스템 운영기준 제정 ○ 익명신고시스템 도입('16. 8월, 레드휘슬) 관련, 시스템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필요성 부각 ○ 공익신고 접수시 원활하고 공정한 신고처리를 위한 내부기준 마련 - 신고접수, 배분, 조사착수여부 결정, 조사기한 등 세부사항 규정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신고처리로 조직내 공익신고제도 운영체계 강화 □ 기준 구성 및 처리 개요 가. 구 성 ○ 총 4장 9조로 구성 <table><tr><td>제1장 (총칙)</td><td>제1~3조</td><td>· 목적, 용어정의, 관리자·담당자의 지정</td></tr><tr><td>제2장 (신고대상, 방법, 처리절차)</td><td>제4~6조</td><td>· 신고대상*, 신고건 배분 및 조사착수여부 결정 등</td></tr><tr><td>제3장 (조사실시 및 결과 통보)</td><td>제7~8조</td><td>· 조사의 실시 또는 수사(감사)기관 이첩 · 조사 및 통보기한 명시</td></tr><tr><td>제4장 (보칙)</td><td>제9조</td><td>·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타 기준 준용 근거 명시</td></tr><tr><td rowspan="2">별표 2종</td><td>제1호</td><td>· 신고유형별 통지 예시</td></tr><tr><td>제2호</td><td>· 헬프라인 신고처리 기준표(신고유형 분류)</td></tr></table> 나. 처리개요 위반건 신고 신고자 접수 및 담당자 배분 (접수일 익일) 관리자 (반부패 소관부서) 접수사실 통지 조사착수여부 결정 (신고유형 분류) 담당자 (감사실, 인사부) 1~2유형 (조사착수) 3유형 (보완요청) 4유형 (신고대상 아님) 5유형 (비방·협담 등) ·직접조사 - 60일내 결과통보 ·수사(감사)기관 이첩 - 중대한 사안 ·적정 보완시 - 조사착수 편입 ·미보완시 - 자동종결 자동종결 또는 소관부서 이첩 즉시종결 및 엄중경고	제1장 (총칙)	제1~3조	· 목적, 용어정의, 관리자·담당자의 지정	제2장 (신고대상, 방법, 처리절차)	제4~6조	· 신고대상*, 신고건 배분 및 조사착수여부 결정 등	제3장 (조사실시 및 결과 통보)	제7~8조	· 조사의 실시 또는 수사(감사)기관 이첩 · 조사 및 통보기한 명시	제4장 (보칙)	제9조	·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타 기준 준용 근거 명시	별표 2종	제1호	· 신고유형별 통지 예시	제2호	· 헬프라인 신고처리 기준표(신고유형 분류)
		제1장 (총칙)	제1~3조	· 목적, 용어정의, 관리자·담당자의 지정															
제2장 (신고대상, 방법, 처리절차)	제4~6조	· 신고대상*, 신고건 배분 및 조사착수여부 결정 등																	
제3장 (조사실시 및 결과 통보)	제7~8조	· 조사의 실시 또는 수사(감사)기관 이첩 · 조사 및 통보기한 명시																	
제4장 (보칙)	제9조	·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타 기준 준용 근거 명시																	
별표 2종	제1호	· 신고유형별 통지 예시																	
	제2호	· 헬프라인 신고처리 기준표(신고유형 분류)																	

붙 임 : 시행문서(창조혁신부 1511-0309, 16.9.28, 제정 전문 포함) 1부

B-3-3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활성화

평가지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활성화

☐ 기관 홈페이지에 복지부정 신고 배너 설치

기관 홈페이지	2/4분기 부터 연계	3/4분기 부터 연계	4/4분기 부터 연계
2/4분기부터 연계	'16. 4. 28	-	-

※ 신고센터에서 기관 홈페이지를 분기별로 조회하여 실적반영 예정(별도 제출 불요) * 아래 항목('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복지부정신고 홍보')에 대한 배너 실적은 불인정

☐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복지부정 신고 홍보

요청일자	이행일자	증빙자료
☐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신고기간 홍보협조('16.1.28) • 홍보기간 : '16.2.1~4.30 • 제출기한 : '16. 3. 30	☐ 이행내용 - 홈페이지(2.1~4.30) • 안내문 게시 및 배너 연계 - 입간판(X배너) (2.15~4.30) • 제작 및 비치(BIFC 로비) - 소식지 활용(주택연금) (3.2~4.30) • 홍보글 게시	창조혁신부 1319-0083 ('16.3.22, 붙임 포함)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홍보협조('16.8.30) • 홍보기간 : '16.9.1~11.30 • 제출기한 : '16. 10. 14	☐ 이행내용 - 홈페이지(9.1~11.30) • 안내문 게시 및 배너 연계 - 홍보 포스터(9.1~11.30) • 본사 각 층 E/L앞 게시	창조혁신부 1319-0290 ('16.9.22, 붙임 포함)

* 공문 및 첨부 기한내 제출 완료(담당자 수신여부 유선확인필)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운영 자료제출 및 협조

요청일자	자료제출 및 협조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신고센터 운영 자료제출 및 협조 사항에 대한 실적(신고센터에서 자체 관리, 별도 자료제출 불요)

C-1-1 기관자체 효과성 평가

□ 금년도 시책 역점 추진내용

○ 부문별 역점 추진사항 정리(요약)

구 분	역점 추진사항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계획수립	■ 과거 평가결과, 공사의 추진역량 및 '16년 평가지표 분석결과 등 연계하여 지표별 체계적 이행계획 수립 - SWOT분석을 통해 도출된 4대 윤리과제를 36개 평가지표와 매칭하여 유기적 이행체계 마련 - 정부 3.0, 4대 백신 프로젝트 등 국정과제 연계항목 적극 도입 - PDCA방식에 충실한 계획수립으로 이행력 및 피드백 기능 강화 제고
부패신고채널 확대 및 윤리내규 대폭 정비	■ 외부 익명신고시스템(레드취슬) 신규 도입 및 운영체계 마련 - 시스템 도입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기준 제정 ■ 윤리내규 대폭 제·개정을 통한 청렴기준 경쟁력 제고 - (개정) 임직원행동강령(2회), 부패행위 신고기준(1회) - (제정) 청탁법신고사무처리기준, 청렴자문위원회 운영기준, 외부익명신고시스템 운영기준
윤리조직 운영 내실화	■ 윤리경영협의회(4회), 외부 옴부즈만회의(4회), 반부패청렴T/F(4회) 운영으로 청렴정책 이행력 및 청렴인프라 경쟁력 강화
선순환적 수검체계 확립	■ 청렴도 조사대상 업무 대체 편입(주택연금*→신탁자금운용 및 헛지) - 청렴도와 무관한 주관적 감정(민원) 반영 가능성이 높은 업무 대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조사업무 및 대체논리 발굴 * 표본 평균연령 만72세, 기타의견 내용이 모두 단순민원(이자, 보증료율, 지점위치 불만 등)

□ 청렴 활동에 대한 성과

○ 정량적 측면

— 시책평가 주지표 이행률 100% 달성

- 권익위 제출 보고서외에 월별 이행계획표 별도 작성 및 수시 점검을 통한 충실한 이행으로 대내외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부패 공직자 및 행동강령위반자 감소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부패공직자	1	-	-
행동강령위반자	10	-	-

—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결과 향상*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조직환경 위험도	7.34	7.78	8.47
업무환경 위험도	6.79	7.19	8.17
개인별 청렴도(평균)	9.50	9.69	9.93

* ('14~15년) 자체 설문진단, ('16년) 객관적 평가를 위한 외부업체 위탁 진단

○ 정성적 측면

구 분	주요 추진사항 효과 및 의의
청렴업무 추진부서 의견	■ 부서간 협업체계 조기구축으로 지표 이행력 제고 및 대응능력 강화 - 권익위 워크숍 직후 협업지표 소관부서 회의를 통한 지표설명 및 조기 협조체제 구축 • 격상된 반부패 청렴업무의 위상 및 이에 따른 상시 협조체제 필요성 공유 - 이후 정기모임을 통한 진행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논의 등으로 정책이행 적시성 및 효과성 제고 ■ 청렴교육 다각화를 통한 대내외 청렴문화 확산 - (대내)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전직원 윤리특강(청렴서약식 및 온라인 특강 병행), 권익위 콘텐츠를 통한 청렴사이버 교육, 부점별 청렴리더 집중교육, 신입직원·승진자 청렴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한 청렴지식 함양 - (대외) 전국 20개 지점에서 연중 30여 차례 실시한 「은퇴금융 아카데미」 활용, 약 2천명 이상의 외부고객에 공익신고제도 전파로 공사 반부패의지 천명 및 대외 청렴이미지 제고
조직 구성원 의견	■ 윤리내규 등 최신화로 조직 청렴역량 및 부패예방체계 구축 - 옴부즈만 회의 등 활용한 내규 개정소요 지속 발굴 및 개정 - 특히, 「공무원 및 공직자 행동강령」 표준안의 충분한 검토 및 기타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한 「임직원행동강령」 전면개정, 「청탁법 사무운영 기준」 등 3개 기준 제정, 「청탁금지법 TF」 운영을 통해 150여개의 공사 질의·답변 사례를 망라하는 자체 가이드라인 시행(책자 750부 제작·배포 포함) 등 청렴제도 최신화(강화) 작업을 「청탁금지법」 시행일(9.28일)에 모두 완료, 대응 적시성 제고 및 조직내 신뢰도 구축 ■ 구성원 청렴정책 참여근거 신설 및 청렴행사 내실화 - 「임직원행동강령」에 구성원 청렴정책 참여근거 신설(제45조의3)을 통한 전사적 윤리정책 참여 분위기 조성 - 청렴퀴즈 등 단순 이벤트는 지양*하고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등 실제 청렴 경쟁력 제고행사에 파격적인 포상비(67.4%) 배정 * 단순이벤트 포상비율 : ('15) 60.3%→('16) 32.6%
외부인 의견	■ 옴부즈만 회의(외부조직) 위상강화 및 운영 내실화 - 공사 예산운영실태 특별감사 제의 및 참석으로 외부 옴부즈만 권한 및 참여수준 격상의 계기 마련 - 의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의안내용, 사전제공시점) 및 옴부즈만 의견반영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합리적 제도개선 체계 확립 ■ 유관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은행)과 실질적인 파트너십 운영으로 Win-Win 관계 수립에 기여 - 사전에 기관별 윤리내규 교환·검토 및 개정사항 제언으로 평가수검 목적의 형식적인 회의형태에서 탈피, 실질적 윤리정책발전을 위한 순기능 역할 수행* * (1차) 총 13개 조문 개정 제언, (2차) 총 3개조문 개정제언, 4개 부문 시책평가 대응방안 전수

□ 미흡한 점 및 차년도 보완사항

구 분	주요 추진사항 효과 및 의의
반부패 청렴조직 역량 강화	■ 윤리경영 업무 감사실 이관을 통한 정책수립 및 이행역량 강화 - (기존) 성과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창조혁신부)내 1개 팀을 윤리경영 전담팀(청렴혁신팀)으로 구성, 반부패 청렴업무 수행 ☞ 부서 고유업무가 윤리경영 업무와 상관관계 낮아, 인적역량·네트워크 및 시너지 효과 창출여건 부족 - (변경) 반부패·감사 업무추진 동력이 강한 감사실에 청렴업무 이관 • 불필요한 부서간 토의 생략 및 독립적인 현안추진 가능 • 조사권한을 통한 부패신고 직접 조사 및 해결 • 다양한 인적구성(3개팀)으로 업무분담을 통한 내실있는 윤리정책 수립 및 집행 가능 • 타 기관 감사부서와 연계한 네트워크 활용으로 신속한 업무수행 역량 구비 가능
윤리체계 (인프라) 보완	■ 청탁금지법 관련 전산 신고채널 구축 - (기존) 외부 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 홈페이지내 감사제보시스템이 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신고 관련 특화된 신고채널 필요 - (변경) 사내 업무시스템(내부) 및 홈페이지(외부)에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전용 신고채널 추가 구축 • 신고채널 다변화를 통한 신고자의 기호 및 편리성 제고 • 신고자의 신고 권리·의무 보장 및 안전한 신고정보 보호장치 마련 • 신고정보 축적·사례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주요사례 공유로 임직원의 경각심 제고 ■ 청탁법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지속 - 권익위 최신 해석내용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및 변경사항 수시 공유 - 추가 질의·답변사항 최신화로 실제사례 대응역량 강화노력 지속
대외기관 협업체계 강화	■ 청렴 클러스터 활성화 - 1차례에 걸친 청렴클러스터(부산 혁신지구) 회의가 있었으나, 세부 운영 내용 및 활동빈도 등 강화 필요 - '17년도에는 더욱 강화된 청렴조직 역량을 바탕으로 클러스터내 청렴 활동을 주도하는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 담당 ■ 민간기구와의 반부패 협력활동 노력 경주 - 내실있는 청렴파트너십 실시 등 대외활동의 질 강화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구와의 협력활동은 더욱 강화할 필요 - 기구의 성격 및 활동, 가입비 유무 등 검토를 통한 활동반경 확대 필요

C-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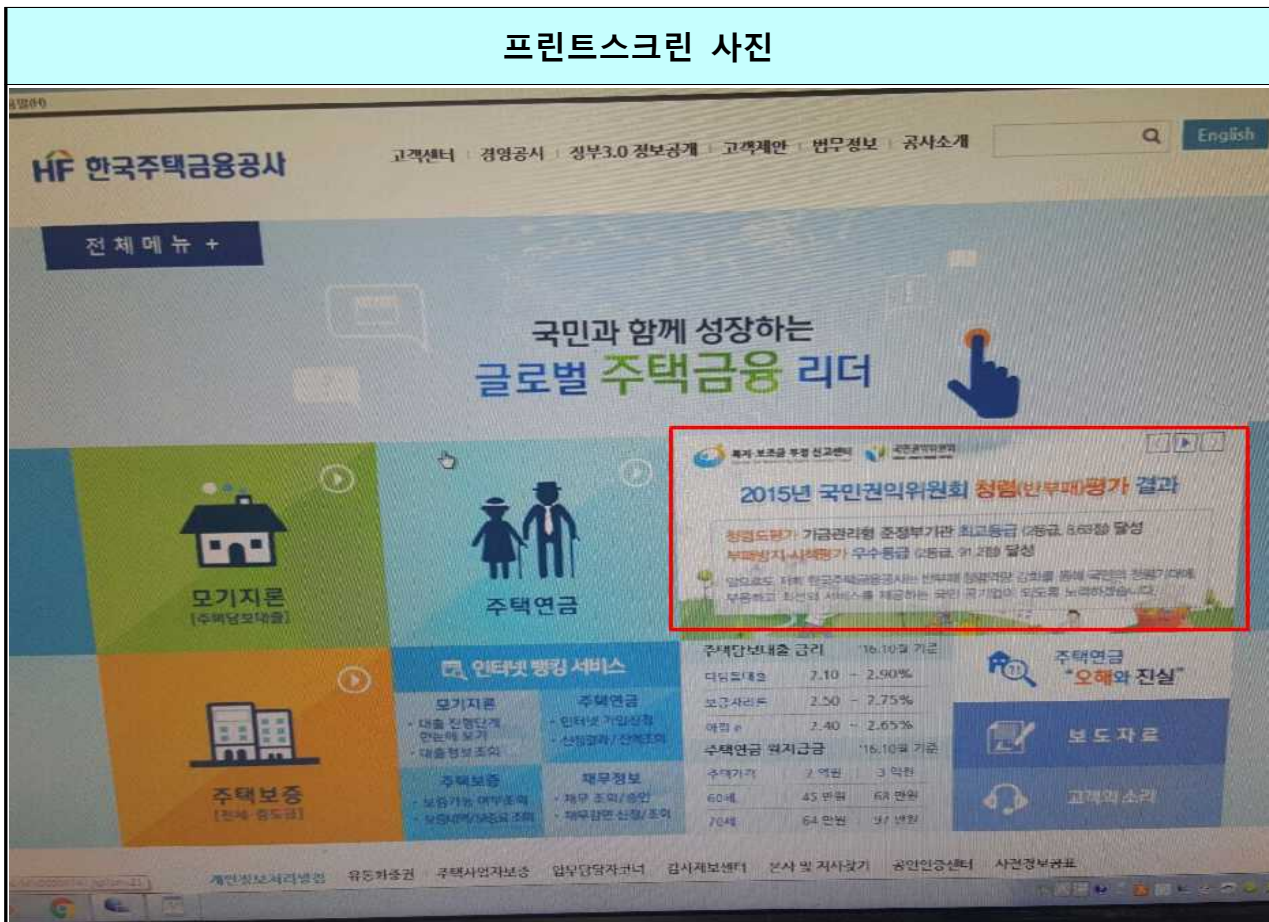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개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개

< 청렴도 측정 등 결과 공개 정도 >

공개 방법	공개 기간	공개 내용
1. 클릭 필요없음 - 홈페이지 접속시 바로 노출 (우측 직사각형 모양 배너) ※ 홈페이지 시작에서 최종도달 까지 클릭 횟수 및 경로·방법	'16.4.30 ~ '16.10.13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반부패)평가 결과 청렴도평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최고등급(2등급, 8.63점) 달성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등급(2등급, 91.2점) 달성

< 확인 자료(프린트스크린) >



□ 기관 간 반부패 협력 활동 실적

< 반부패 자율협력 활동 실적 >

연번	파트너 기관		주요 활동내용	유형	관련 근거
	기관명	'15년 등급			
1	한국은행	3등급	(공통사항) - 임직원행동강령 규정 개정소요 발굴 및 의견 개진 • 각 기관 행동강령 등 제공(요청) 및 수정소요 발굴·개정사항 관련 상호 제언 • 행동강령 개정시(총2회-5월·9월) 각 기관별 제언내용 반영* * 기관별 상세내용은 관련근거 '붙임' 참조	실무자간 업무회의	창조혁신부 1313-0123('16.5.2) 창조혁신부 1313-0133('16.5.16) 창조혁신부 1313-0145('16.5.24)
2	국민체육진흥공단	3등급	- 시책평가 수검 관련 기관별 취약 지표 해소방안 등 의견 공유 • 윤리전담부서 인센티브 제공방안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우수사례 • 민간단체와 협력체 구성방안 등		창조혁신부 1313-0123('16.5.2) 창조혁신부 1319-0207('16.7.15) 창조혁신부 1313-0216('16.7.21)
			(개별사항-국민체육진흥공단) - 공단의 공사 행동강령 조문 차용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검토의견 회신		(요청) 윤리문화팀-1214('16.9.27) (회신) 창조혁신부 1313-0316('16.9.29)
			- 청렴파트너십 회의결과에 따른 공사 행동강령 조문 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의뢰 및 수신		(요청) 창조혁신부 1319-0361('16.10.26) (회신) 윤리문화팀-1480('16.10.28)
			(개별사항-한국은행) - 청렴파트너십 회의결과에 따른 공사 행동강령 조문 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의뢰 및 수신 - 은행 행동강령 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검토의견 회신		(요청) 창조혁신부 1319-0361('16.10.26) (회신) 인사팀-3712('16.10.26) (요청) 인사팀-3755('16.10.27) (회신) 창조혁신부 1313-0368('16.10.28)

< 반부패 시책 추진 자료 공유 실적 >

연번	자료명	대상기관	공유 유형	관련 근거
1	'16년 부패방지 추진계획 KSPO 윤리규범 외 하위기준 11종	국민체육 진흥공단	요청	창조혁신부 1313-0133('16.5.16)
2	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외 하위기준 6종		제공	
3	조문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의뢰 및 회신		요청	창조혁신부 1319-0361(16.10.26)
			제공	창조혁신부 1313-0316('16.9.29)
4	임직원행동강령	한국은행	요청	창조혁신부 1319-0207('16.7.15)
5	공사 임직원행동강령 ('16.9.28일 개정후)		제공	
6	조문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의뢰 및 회신	한국은행	요청	창조혁신부 1319-0361(16.10.26)
			제공	창조혁신부 1313-0368('16.10.28)

C-2-2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실적

※ 권익위에서 지정한 반부패수범사례(수범사례 목록 참고)의 도입 실적

① 수범사례 도입 현황

필수 수범사례(A)	선택 수범사례(B)	점수
2건/2건	10건/10건	80점/80점

○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과제 현황

※ 권익위에서 지정한 반부패수범사례의 지정번호에 따라 작성

※ 도입여부에 기실시, 신규도입완료 표시

< 수범사례 도입 현황 >

연번	반부패 수범사례		주요 내용	도입 여부	관련 근거
	지정 번호	기관이 추진 중인 수범사례명			
1	1	부서별 청탁등록 대상 업무 및 청탁유형 설정	대상업무 및 유형 설정 후 부점별 자체 교육을 통해 청탁등록 활성화 유도	기실시	인재경영부 2219-1243 ('14.10.08)
2	2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 수칙 제정 및 실시	임직원 행동기준 제정	기실시	창조혁신부 1521-0327 ('15.10.26)
3	4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임직원행동강령에 구체화	기실시	임직원행동강령 제19조의2
4	5	사건 관계인(직무관련자)과 부적절한 사적접촉제한 등	임직원행동강령에 구체화	기실시	임직원행동강령 제16조
5	6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금지 등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임직원행동강령에 구체화	기실시	임직원행동강령 제17조
6	7	비위행위 징계처분자 전보조치 및 청렴교육 규정	비위행위자 뿐만 아니라 부패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도 전보조치 및 외부 위탁교육(청렴교육) 명령	기실시	인사규정 제93조

7	8	부패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 구 체적 처벌기준 도입	인사규정에 구체화	기 실시	인사규정 제95조 <별표6>
8	10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마련	퇴직임원의 취업제한 조항 신설	신규도입 완료	임직원행동강령 제22조의2
9	11	입찰 시 '퇴직자 영입현 황 확인서' 제출 의무화	계약규정에 구체화(수의계약 체결시 해당 법인의 임원명단 제출 의무화)	기 실시	계약규정 제67조
10	13	공용재산 사적 사용 시 징벌적 손해배상	사적 사용 시 수익금액의 3배 범위내 손해배상	기 실시	임직원행동 강령 제18조
11	14	감사사례를 DB화하여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감사사례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기 실시	감사실 7329-0343 (2014.09.15.)
12	15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 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입찰관련 부패행위 인지도 신고경로를 입찰 공고문에 명시토록 업무지도(10월)및 계약 규정 개정(11월 예정)	신규도입 완료	인사부 1529-2014 (2016.10.25.)
13	16	기관장 및 고위직 공무원이 선도하는 청렴 교육실시	고위직 청렴교육 실시	기 실시	창조혁신부 2229-0172 (2016.06.15.) 창조혁신부 2229-0275 (2016.09.07.)
14	17	직무연수·훈련 과정에 청렴교육 과정 운영	신입직원, 직급별 리더십 연수에 청렴교육 과정 운영	기 실시	인사부 2221-1232 (2016.06.22.) 외 3개 문서
15	18	외부전문가 감사인력 Pool 구성·운영	자산관리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과 MOU를 체결하여 감사인력 POOL 구성·운영	기 실시	감사실 9219-0326 (2014.08.28.)

- ☞ 수범사례 도입 관련 근거(기 실시, 신규도입 완료)는 권익위 담당자에게 E-mail로 제출
- ☞ 실적 인정을 원하는 수범사례별로 파일명 작성 후 압축하여 E-mail 제출
(인정을 못 받는 사례가 일부 발생 가능하므로 최대 15개까지 제출)

D. 감점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평가지표 부패공직자 등 현황 관리 충실도

☐ 부패공직자 현황 관리 충실도

○ 부패공직자 제로미 시스템 입력 실적

대상기간	부패공직자 입력건수*	징계의결서 첨부건수**
'15년 하반기 (15. 7. 1. ~ 12. 31.)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6년 상반기 (16. 1. 1. ~ 6. 31.)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및 징계(파면, 해임, 면직,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주의, 경고, 훈계 등) 처분을 받아 제로미 시스템에 입력된 공직자 수 (발생 내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징계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처분요구서 등 자료를 첨부한 건수만 입력

○ 자료 입력(제출 기한) 준수

구 분	'15년 하반기 자료 제출일	'16년 상반기 자료 제출일
제출일자	'16년 2월 24일	'16년 9월 7일